

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
의안 번호	3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0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법제처에서 선정한 「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」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비대상(5개 유형)

- 1)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
- 2)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미반영
- 3) 공유재산·계약 분야
- 4) 지방보조금 분야
- 5) 가산금·과태료·지방세 분야

⇒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조례 개정안 확정

나. 개정 세부내용

- 1)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

-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규정 삭제(안 제21조제4항)
-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5 개정으로 ‘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관의무’와 ‘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’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사업 운영의 적법성 강화(안 제20조제5항)
-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‘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’의 불명확한 보조금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도모(안 제26조제1항)

2)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(안 제9조제1항)
- 상위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횟수제한이나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성 제고 (안 제9조제2항)

3) 「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-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으로 사서자격증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, 지역 여건상

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
(안 제11조제2항)

-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완화
(안 제12조제1항)

4)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

- 「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수의직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시·군의 경우 의료업무 수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상한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원활한 충원 도모(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 3)

5) 「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」의 개정

- 상위법령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위임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(안 제15조)

6) 「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

-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(안 제12조제1항)

7) 「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」의 개정

- 상위법령인 「지하수법」에서는 가산금 부과 규정만 있으나 조례에서는 증가산금 부과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해소(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)
- 2016. 5. 27일 조례 내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과 별표를 모두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방지(안 제27조)

8) 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개정

-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가 아닌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에 따라야 하므로 과태료 용어를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방지(안 제4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18. 7. 20. ~ 8. 9.(21일간, 제출의견 없음)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계산서: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
2. 증거서류: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3. 첨부서류: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6조 제목“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”을“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“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”을“위반한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확보하여야 한다”를 “확보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”을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”을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단,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호”를 “제2호가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산물의 검역업무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)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.

제3조 후단 중 “별표 3과”를 “별표 4와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종전의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”를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제28조 중 “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·징수”를 “부담금의 부과·징수”로, “영 제44조 및 지방세부과·징수”를 “지방세 부과·징수”로 한다.

별표 2 내지 별표 6을 삭제한다.

제7조(「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8조(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 중 “요금, 수수료, 과태료,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”을 “요금, 수수료,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별표 개정안(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)

[별표 2]

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제1항 관련)

근무년수별 \ 등급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 이하	월 973,000원 이하
4년 이상	월 1,306,000원 이하	월 967,000원 이하
3년 이상	월 1,300,000원 이하	월 961,000원 이하
2년 이상	월 1,295,000원 이하	월 956,000원 이하
2년 미만	월 1,289,000원 이하	월 950,000원 이하

※ 비고 : 1.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.

2. 등급(가, 나) 구분 :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제3조 별표 1

[별표 3]

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제2항 관련)

지급 대상	지급액
가축·동물·축산물의 방역·검역·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)	월 500,000원

[별표 4]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(제3조 관련)

지급 대상	지급액
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.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
② 분뇨.하수.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40,000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□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0조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계산서: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</u></p> <p><u>2. 증거서류: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</u></p> <p><u>3. 첨부서류: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</u></p>
<p>제21조(실적보고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</u></p>	<p>제21조(실적보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<p><u>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6조(<u>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</u>)</p> <p>① <u>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26조(<u>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</u>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위반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□ **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1조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.</u></p>

제12조(운영인력)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<u>확보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	제12조(운영인력) ① ----- ----- ----- <u>확보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□ **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**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</u>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</u> 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<u>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(이하"법"이라 한다)</u>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· 개방화장실· 이동화장실· 유료화장실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「 <u>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설치기준) ① <u>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"령"이라 한다)</u>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	제5조(설치기준) ① <u>법 시행령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3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.하수.폐수.쓰레기처리 업무,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.

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)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.

제3조(장려수당) -----

별표 4와 --.

□ **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**

현	행	개	정	안
---	---	---	---	---

<p>제9조(위탁기간) ① <u>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,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.</p>	<p>제9조(위탁기간) ① <u>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5년 ----- -----.</p>
--	--

□ **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가산금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이하 “증가산금”이라 한다)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</u></p>	<p>제19조(가산금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<p>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27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) <u>군수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28조(준용) <u>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44조 및 지방세 부과·징수의 예를 준용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/p> <p>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--.</p> <p><삭 제></p> <p>제28조(준용) <u>부담금의 부과·징수 -----</u> ----- ----- <u>지방세 부과·징수</u> ----- -.</p>
--	---

□ **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**

현 행	개 정 안
<u>제15조(가산금과 증가산금) ①사</u>	<삭 제>

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②납부기한 경과후 90일 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③납부기한 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④제2항과 제3항의 가산금은 체납액이 2,5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□ **평창군 수도급수 조례**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지방세 징수의 준용) 이 조례에 따른 <u>요금, 수수료, 과태</u>	제45조(지방세 징수의 준용) ---- ----- <u>요금, 수수료, 그 밖</u>

료,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
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
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
에 따른다.

의 일체의 징수금-----

-----.

관계법령 발췌

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□ 지방재정법(시행 2018.6.28., 법률 제15528호)

제32조의5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
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2.29.>

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12.29.>

[본조신설 2014.5.28.]

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

해당하는 경우

② ~ ⑥ 생략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⑧ 생략

[본조신설 2014.5.28.]

□ **지방자치법(시행 2017.7.26., 법률 제14839호)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□ **작은도서관 진흥법(시행 2016.5.4., 법률 제13973호)**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작은도서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도서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·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**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(시행 2012.8.18., 대통령령 제24041호)**

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□ **도서관법(시행 2018.3.13., 법률 제15167호)**

제6조(사서 등)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,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.

<개정 2009.3.25., 2012.2.17.>

② 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3.25., 2012.2.17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2.2.17.]

□ **도서관법 시행령(시행 2017.7.26., 대통령령 제28211호)**

제4조(사서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2.8.13.>

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2.8.13.>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12.31., 2012.8.13.>

[제목개정 2012.8.13.]

[별표 2] <개정 2012.8.13.>

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	배치기준
공공도서관(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	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,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,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.

관은 제외한다)	
작은도서관	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.
장애인도서관	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.
전문도서관	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.

[별표 3] <개정 2012.8.13.>

사서의 자격요건(제4조제2항 관련)

구분	자격요건
1. 1 급정사서	<p>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나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</p> <p>다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(이하 "도서관 등 근무경력"이라 한다)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라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(이하 "지정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(이하 "소정의 교육과정"이라 한다)을 이수한 사람</p>
2. 2 급정사서	<p>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(교육대학, 사범대학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,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</p> <p>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다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라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</p>

	<p>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마.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바.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사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
3. 준사서	<p>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(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)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</p> <p>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(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)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다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</p>

비고

1. "도서관 등 근무경력"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.
 - 가. 도서관
 -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·전문도서관
 - 2)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·전문도서관
 - 3) 대학도서관, 학교도서관
 - 4)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
 - 나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- 다.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
2.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
□ **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(시행 2017.7.26., 법률 제14839호)**

제9조(개방화장실) ① 생략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~ ④ 생략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**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시행 2018.1.1., 대통령령 제28018호)**

제8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등)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"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<개정 2017.5.8.>

② 생략

[제목개정 2017.5.8.]

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□ **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(시행 2018.7.3., 대통령령 제29021호)**

제14조(특수업무수당)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.

<개정 1987.12.31., 1992.1.24., 2010.1.7., 2013.12.11., 2016.6.28.>

[별표 9] <개정 2018. 1. 18.> ※ 일부수정(관계없는 규정 생략)

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14조 관련)

구분	수당명	지급대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
기술분야	2. 의료업	다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	월 250,000원 (광역시·도의 관할 구역 안에

<p>무 등 의 수 당</p>	<p>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산물 의 검역업무와 「축산물위 생 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공무원[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수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 원) 및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 정」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4급 상당 이상의 직위 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 접 담당하는 공무원) 중 수의 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]</p>	<p>두는 시·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,000원 초과 월 500,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시행 2017.7.26., 법률 제14839호)
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"총 사용가능기간"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4. 1. 7., 2015. 1. 2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③ ~ ⑤ 생략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(시행 2018.7.10., 대통령령 제28577호)**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6. 21., 2015. 7. 20.>

④ ~ ⑤ 생략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

□ **지하수법(시행 2018.6.8., 법률 제15624호)**

제30조의3(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6.22.>

1. ~ 5. 생략

② ~ ③ 생략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13.5.22., 2016.12.27.>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13.5.22., 2013.8.6.>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**지방세징수법(시행 2018.6.27., 법률 제15294호)**

제30조(가산금)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□ **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(시행 2018.6.27., 법률 제15293호)**

제9조(압류의 요건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.

□ **질서위반행위규제법(시행 2017.6.3., 법률 제14280호)**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**지방자치법(시행 2017.7.26., 법률 제14839호)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시행 2018.6.27., 법률 제15300호)

⇒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·징수규정 없음

□ 지방자치법(시행 2017.7.26., 법률 제14839호)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평창군 수도급수 조례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(시행 2017.6.3., 법률 제14280호)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 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3
⇒ 가축방역 및 동물·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
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수의사
면허소지자에 한함)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(월 500천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
연락처	(033) 330 - 2206